

수원지방법원 2024. 10. 29 선고 2023가단554062(본소), 2023가단56758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 구상금]

전 문

원 고 A

원고(반소피고) B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표, 이기승

피 고 C

피고(반소원고) 1. D

2. E

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창

담당변호사 송인혁, 이해승

변 론 종 결 2024. 5. 7.

판 결 선 고 2024. 10. 2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B는 피고(반소원고) D, E에게 17,203,367원 및 그중 14,839,731원에 대하여는

2023. 6. 28.부터, 2,363,636원에 대하여는 2023. 8. 19.부터 각 2024.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 피고(반소원고) D, E에 대한 원고 A의 주위적 및 예비적 본소 청구와 원고(반소피고) B의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D, E의 주위적 반소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 A과 원고(반소피고) B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 중 4/5는 원고(반소피고) B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D, E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 A의 주위적 본소 청구와 원고(반소피고) B의 본소 청구:

피고 C과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D, E은 원고 A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22. 12. 29. 접수 제110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 A의 예비적 본소 청구: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600,000원 및 그중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 27.부터,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2. 27.부터,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3. 27.부터,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27.부터,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5. 27.부터, 1,6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6. 27.부터 피고들에 대한 각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3. 7. 27.부터 원고 A의 사망 시까지 매월 27일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위적: 원고 B는 피고 D, E에게 84,868,523원 및 그중 81,618,523원에 대하여는 2023. 6.

28.부터, 나머지 3,25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19.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원고 B는 피고 D, E에게 18,089,731원 및 그중 14,839,731원에 대하여는 2023. 6.

28.부터, 나머지 3,25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19.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 A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와 피고들은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22. 7. 20. G에게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기간 2022. 7. 30.부터 2024. 7. 3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2022. 12.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 지분을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2022.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제110114호로 각 1/3 지분씩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은 2023. 1. 18.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은 H조합 일동지점(이하 ‘이 사건 H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80,309,597원의 채무(이하 ‘이 사건 H조합 채무’라 한다)가 남아있었다.

라. 2023. 6. 28. 피고 E은 41,618,523원을, 피고 D은 40,000,000원을 각 입금하여 이 사건 H조합 채무를 전액 변제하였다.

마. 원고들과 피고들은 세무법인 I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대행 업무를 위임하여 그 보수로 13,000,000원(이하 ‘이 사건 상속세 신고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하였는데, 피고들은 2023.

8. 18. 세무법인 I 명의의 계좌로 ‘원고 B의 세무사비 미납금’ 명목으로 3,250,000원(13,000,000원 $\times$ 1/41))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 2, 1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은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원고 A 사망시까지 원고 A에게 매월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 상당액 1,6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부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부담부 증여계약에서 정한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본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29.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접수 제110114호로 마친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서 부담으로 정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원고 A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성립한 2022. 12. 27.부터 2023. 6. 27.까지 미지급한 9,6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 상당액 1,600,000원 $\times$ 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또한 2023. 7. 27.부터 원고 A의 사망 시까지 매월 1,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단순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부담부 증여’라 함은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로 수증자가 행하는 어떤 급부가 증여계약의 부관인 부담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하고, 수증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기대하고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급부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못한 때에는 이는 증여의 동기나 행위 기초에 불과할 뿐 부담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증여에 상대방담(민법 561조) 등의 부관이 붙어 있는지 또는 증여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을 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대립하는 의사가 있고 그것이 말 또는 행동 등에 의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어 합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그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878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담당한 K 변호사 사무소의 직원 J는 2022. 12.

7. 망인의 자택에 방문하여 망인으로부터 증여 의사를 직접 확인한 후 등기의무자의 본인 확인 서류(갑 12호증의 2) 등을 작성하였는데, 위 서류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담의 내용이 전혀 부기되어 있지 않다.

② 증인 J는 2022. 12. 27. 망인의 증여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망인이 “지금 적금이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날 용돈 주는 개념으로 용돈을 다오.”라고 말하였고, J가 망인에게 “보증금이나 받는 월세가 있을 경우 부담부 증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자 망인이 “난 그렇게 복잡하게 하기 싫다. 그냥 증여를 해주는 거다. 증여를 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 않겠냐.”라고 말하였으며, 망인과 J는 위 대화를 망인 자택의 안방에서 나누었는데, 피고들은 위 안방의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에 따르면 망인은 직접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계약이 아닌 단순 증여계약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용돈을 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말한 것도 아니었다.

- ③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각 사실확인서(갑 5호증)는 원고측의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 원고측에서 미리 작성한 문서에 날인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④ 한편 증인 L는 피고 D의 배우자인 M로부터 ‘월세 나오는 부동산을 어머니(원고 A)가 갖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월세 나오는 부동산’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증인 L는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월세로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증언하는 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의 액수는 1,600,000원으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증인 L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6호증)에는 L가 M로부터 원고 A이 ‘(망인과 원고 A) 두 분이서 살던 집’을 소유하기로 전해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증인 L가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은 ‘월세 나오는 부동산’을 원고 A이 소유하기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증인 L가 진술하는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따라서 갑 6호증의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⑤ 증인 N의 증언은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 A에게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양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3)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단순 증여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부담부 증여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증여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원고 A의 주위적 본소 청구 및 원고 B의 본소 청구)와 원고 A의 부양의무 이행 청구(원고 A의 예비적 본소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H조합 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D, E

망인 명의의 이 사건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은 망인이 아닌 원고 B이므로 이 사건 H조합 채무는 원고 B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 D, E이 원고 B 대신 이 사건 H조합 채무 81,618,523원을 전액 변제하였으므로 원고 B는 피고 D, E에게 구상금으로 81,618,5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 설령 위 채무 전액에 관하여 원고 B의 변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위 채무는 상속채무로서 공동상속인인 원고들 및 피고들에게 가분적으로 귀속되어 원고 B는 적어도 자신의 법정상속분만큼은 이 사건 H조합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B는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한 피고 D, E에게 구상금으로 14,839,731원(= 81,618,523원 × 2/1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

나) 원고 B

이 사건 H조합 채무는 원래 원고 B가 아닌 망인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인데,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O 답 3,0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는 ① 2017. 4. 20.자 채권최고액 65,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P조합인 근저당권과 ② 2017. 5. 29.자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P조합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그런데 피고 D, E은 2022. 12. 15.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이 사건 H조합 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원고 B는 이 사건 H조합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으므로 피고 D, E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살피건대 을 3,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좌로부터 원고 B 및 원고 B의 배우자인 Q의 명의로 2017. 4. 25.부터 2022. 12. 15.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 거래가 이루어졌고, 망인이 2020. 4. 10. 이 사건 계좌에 관하여 H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연체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예고통지서’를 촬영하여 그 이미지를 원고 B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 D, E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H조합 채무가 원고 B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J는 2022.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등기 서류를 작성하기 위하여 망인의 자택에 방문하였을 당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서류도 받았는데,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망인이 '조합비'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위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H조합 채무는 원고 B가 사용한 것이 아닌 망인이 H조합에 대하여 부담한 조합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가 이 사건 H조합 채무 전액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한 피고 D, E의 이 사건 H조합 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망인이 생전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생전에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H조합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된다.

그리고 제3자가 유효하게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와 계약관계가 있으면 그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러한 계약관계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734조 1항에서 정한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민법 739조에 정한 사무관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76539 판결 참조). 사무를 관리한 자는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739조 1항), 그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도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민법 688조 1항의 준용).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D, E이 위와 같은 상속 채무를 각자의 채무액을 넘어 원고 B의 채무까지 변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는 피고 D, E에게 자신의 법정 상속지분(2/11)에 해당하는 돈 및 그 지출일부부터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D, E이 이 사건 조합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원고 B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B는 피고 D, E에게 이 사건 H조합 채무 중 원고 B의 법정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4,839,731원(= 81,618,523원 × 2/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상속세 신고비용 채무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피고 D, E

원고 B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속세 신고비용 채무 13,000,000원을 각 균등 비율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원고 B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인 3,250,000원(= 13,000,000원 × 1/4)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 D, E이 원고 B 대신 위 세무사 비용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원고 B는 피고 D, E에게 구상금으로 위 세무사 비용 3,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

원고 B는 세무법인 I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대행 업무를 위임하는 것에 동의한 적 없고, 세무법인 I의 상속세 신고수수료 청구 명세서(을 11호증의 1)에 기재된 비용은 산정 내역을 알 수 없어 믿기 어렵다. 나아가 위 세무사 비용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각자 법정상속분대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전체 세무사 비용 중 원고 B의 법정상속분인 2/11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 B와 피고들이 망인의 사망 이후 세무법인 I에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대행 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 D, E이 2023. 8. 19. 세무법인 I에 그 보수로 1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상속세 신고비용에 해당하여(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되어야 하는데(민법 998조의2),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의 부담비율에 따라 그 비용지급채무를 부담하고, 그 부담비율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채무와 같이 법정상속분이라 할 것이다.

원고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상속세 신고비용 채무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11에 해당하는 금액인 2,363,636원(= 13,000,000원 × 2/11)만큼 납부하여야 할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 D, E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 B는 피고 D, E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 B는 피고 D, E에게 2,363,636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원고 B는 피고 D, E에게 17,203,367원(= 이 사건 H조합 채무 중 원고 B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14,839,731원 + 이 사건 상속세 신고비용 채무 중 원고 B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363,636원) 및 그중 14,839,731원에 대하여는 피고 D, E이 위 H조합 채무를 대위변제한 2023. 6. 28.부터, 2,363,636원에 대하여는 피고 D, E이 상속세 신고비용을 대위변제한 2023. 8. 19.부터 각 원고 B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피고 D, E의 원고 B에 대한 예비적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반소 청구, 나머지 예비적 반소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원고 A의 주위적, 예비적 본소 청구와 원고 B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이진관

목 록

1) 피고들은 어머니인 원고 A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녀들이 균등하여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